
제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2011. 11. 16.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

I. 추진의의	1
1. 추진 배경	1
2. 식품안전추진체계	2
II.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분석	3
1. 주요 성과	3
2. 미흡한 점	5
III. 제2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7
1. 여건 및 환경분석	7
2. 전략·기본방향 및 비전	11
3. 주요 과제별 목표치	14
IV. 제2차 기본계획 세부과제	15
1. 분야별 주요내용	15
2. 과제별 세부추진내용	20
V. 향후 추진계획	69
<참고 1> 과제별 핵심내용 및 추진부처	70
<참고 2> 법령 제·개정 사항	75
<참고 3> 과제별 소요 예산	79

I. 추진 의의

1 추진 배경

□ 식품안전법에 근거한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완료

○ 제1차 기본계획의 완료에 따라 그간 추진상황을 분석·평가,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 필요

* “(제6조) 국무총리는 3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09년도에 ‘제1차 계획(‘09-’11)’ 수립·시행

* 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 4대 전략분야 54개 과제 수립·추진

○ 식품의 생산·유통과정 및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위해성평가 및 소통 강화 등 필수과제의 심화·확대 추진 필요

☞ 이력추적제 관리 강화, 유해물질 기준 확대, 학교급식 안전성관리 강화 등

□ 식품안전 여건 및 환경변화에 효율적·적극적인 대응 필요

○ 식품분야의 신기술 활용·기후 변화 및 선진국의 식품안전 정책강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식품안전사고에 대비

* 일본 방사능, 독일 채소의 장출혈성 대장균, 소해면상뇌증(BSE) 등

○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및 기대수준에 부응

<추진경과>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구성(‘08.12.14)

- 제1차 기본계획(‘09-’11)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식품안전관리 추진전략 및 향후 추진방향 연구용역(‘11.3~8, 보사연)

▶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중점과제(3개) 민관 합동점검 실시(‘11.6~9)

▶ 민간위원협의회 및 기획제도전문위원회 개최, 2차 기본계획 검토(‘11.11.2)

2 식품안전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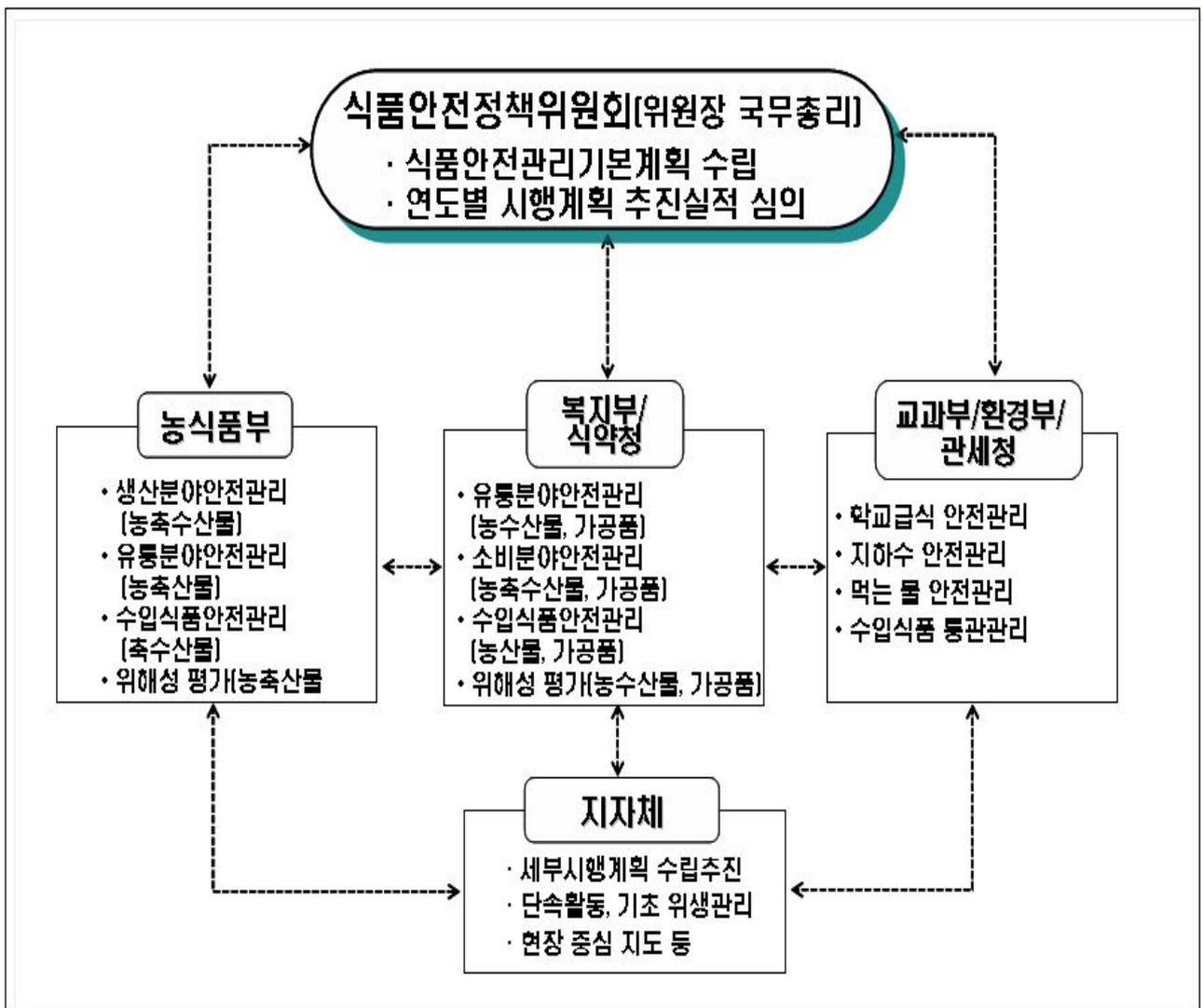
□ 6개 정부부처에서 28개 법률에 근거 식품안전정책 담당

-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위생법(복지부 · 식약청), 축산물위생관리법(농식품부), 먹는 물 관리법(환경부), 학교급식법(교과부) 등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정책 추진을 위해 식품안전정책 위원회에서 식품안전관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추진

- * 정책 추진과정에 소비자 · 학계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 등 소통체계 운영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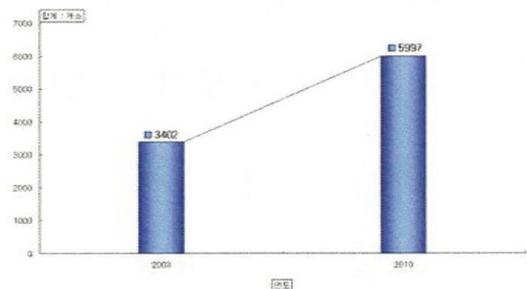
1 주요 성과

□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 전 과정의 위해요소를 차단하는 **사전에방적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대형 식품사고 예방**

- 식중독 실시간 모니터링·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조사, 수출국 현지점검 등 수입관리, HACCP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업체 확대 등을 통한 안전체계 강화



<식중독 발생 추이>



<HACCP 적용추이>

□ 식품정책 추진과정에 소비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 향상**

- 식품안전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여 **소비자 안심 환경 조성**

*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07~), 위해식품자동판매차단시스템('09~) 등

- 소비자에게 식품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도록 **인증제 및 원산지 표시제 개선**

* 인증제 통폐합('10: 18종 → '11: 11종),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07: 쇠고기 → '11: 소·돼지·닭·오리고기, 쌀·배추김치)

□ 식품안전 정보교류를 위한 대내외적 협조체계의 충실한 이행으로 관계기관간 원활한 공조 및 국제 교류 활성화

○ 중앙과 지방정부간 안전관리 협력을 통해 효율적 조사 추진

* 수산물 검사기관 확대 :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산과학원 → ('11) 지자체 추가

○ 국제기구 및 교역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안전성 제고

* 아시아 국가간 정보교류협의체(ASIA INFOSAN) 개최('11.9, 서울)

* 태국·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 등과 위생약정 체결

○ 국내외 기관 및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수집 등 조기경보체계 유지

* ('10, 식약청) 48개국 22,302건 수집·분석, 수입제한 등 449건

□ 각 부처의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범정부차원에서 통일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 어린이 식품안전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교과부, 식약청, 지자체)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 ('09) 8,051구역 → ('11.6) 9,318구역

□ 전문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평가를 위한 기반을 강화

○ 적극적인 대외활동, 주요 국가와 양해각서(MOU) 체결 등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활용

* 협력MOU : 독일 연방위해평가원('10, 식약청), 미국 미주리주립대('10, 농식품부)

○ 매뉴얼·지침 보완·개발로 위해성평가 과정을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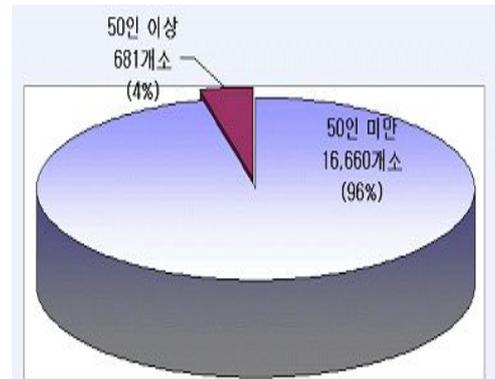
* 미생물 위해평가 매뉴얼('10), 위해평가지침서('11)

2 미흡한 점

□ 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HACCP, GAP)의 실효성 미흡

- 재정·인력 운영 등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소규모 농어장의 참여 곤란

* 식품업체 현황('09, 식약청) : 17,341개소
* 농어장('09, 통계청) : 1,264천개소



- 프로그램의 적용이 분야별로 불균형하거나 낮은 수준이며, 양적인 확대에 치우쳐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 다소 소홀
- * HACCP 적용현황('10) : 도축장(100%), 사료(91.0%), 가공(75.8%), 농장(19.5%), 보관(6.1%), 식품제조업체(5.2%), 식육판매(0.6%)
- * GAP 적용 현황('10) : 농산물 총생산량의 약 3%(EU: 70~80%)
- 식품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한계

□ 원산지 단속의 실질적 효과 미흡

- 경제적 이익 확대 등을 위해 원산지 위반 행위가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나, 원천적 근절은 미흡
- 원산지 위반 품목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증방법이 다소 미흡함에 따라 단속 사례에 대한 분쟁 소지가 부담
- 원산지 단속을 위한 관련정보의 구축,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 미흡

□ 변화하는 식품안전여건에 신속적·효율적 대응 한계

- 사료·신종물질(멜라민, 포르말린, 방사능 등)·농산물의 식중독균, 폐광산 농지 등 소비자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의 관리 미흡

☞ EU 등 선진국은 생물학적 요소에 대한 관리 강화 추세

- 다양한 식품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와 제도 개선 노력 부족

□ 중앙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민-관간 협력·협조체계 미흡

- 식생활 안전정책 등 정부부처간 사전 업무협조가 부족하여 업무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 발생
- 유해물질 모니터링·정보 수집 관리 등 부처간 중복사업 추진으로 범국가적 인력·예산 낭비 요소 존재

□ 식품안전정보의 효율적·종합적 관리 및 대국민 소통 미흡

- 위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부족, 정보의 공유·제한적 활용 등으로 범정부차원의 시너지 효과는 부정적

☞ 위해성평가를 위한 식품섭취습관 및 추이, 식품오염도 등 기초자료가 필요하나, Codex 및 선진국의 자료를 인용하는 실태

- 수출국 현지 식품안전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수집 취약, 국내 업계 등 개별적 자료 및 정보 활용 미흡
- 오피니언 리더의 참여 한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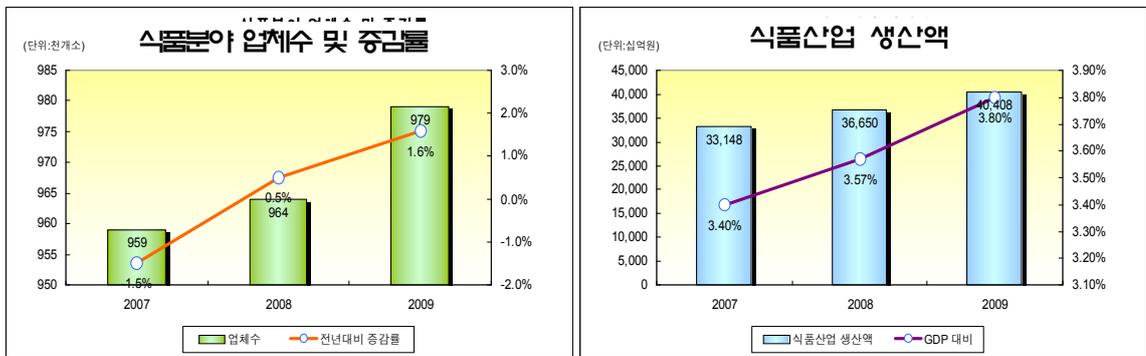
Ⅲ.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여건 및 환경분석

가. 대내적 환경

□ 식품안전사고 가능성의 증대 및 사고 유형의 다양화

- 국내 식품업체 수가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식품산업 총생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위험노출도 확대



- 산업발달에 따른 환경유해물질이나 제조과정상 유해물질의 혼입 등 비의도적이며 예기치 못한 사고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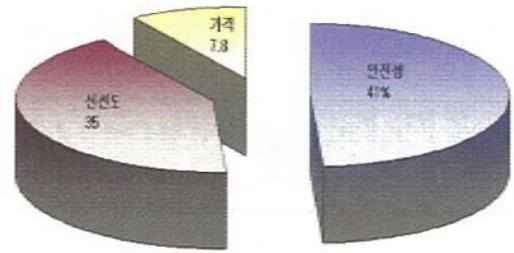
* 중국 멜라민 분유('09), 과자류 이물('10), 염전 농약('11) 등

- FTA 체결 등 식품 수입증대요인의 확대로 안전사고의 발생 개연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삶의 질 향상으로 식품구입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식품 구매시 고려사항



- 식품사고의 지속성·다양화로 소비자의 불안감 상존

* 식생활 불만족 요인과 식품 구매시 고려사항중 최우선으로 조사(농경연, '09-'10)

□ 외식·인스턴트식품 소비 증가로 인한 비만·영양 불균형 증가

- 소득수준 향상, 여성취업·독신가구 증가로 외식산업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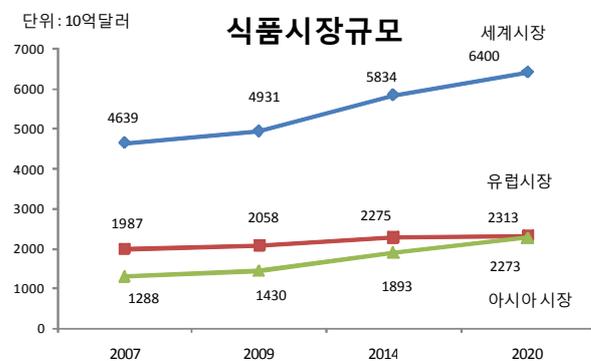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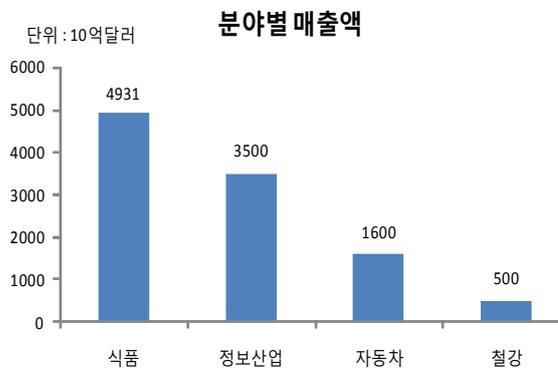
* 외식산업 매출(통계청) : ('99) 379천억원 → ('04) 549 → ('08) 647

- 인스턴트 식품 등으로 어린이 비만을 증가와 영양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식생활 관리 필요

* 어린이 비만율('11.6. 교과부) : ('08)11.2% → → ('10)14.3%

나. 대외적 환경

□ 세계의 식품산업규모('09년, 4.9조 달러) 지속 확대 예상



(런던 소재 글로벌리서치 Datamonitor, '09)

□ 식품의 생산·가공·저장 기술의 발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사고의 잠재적 위해요인 증가

○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제조에 따른 안전성 논란 등 소비자 불안 요인 내재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온·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식중독 등 질병 확산 우려

* 온도 1°C 상승시 식중독 5.27%, 말라리아 등 5대 전염병 4.27% 증가(보사연, '09)

□ WHO·Codex 등 국제기구 및 미국·EU 등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핵심관리요소를 설정·관리하고, 과학에 기반한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

* 항생제 관리(Codex), 살모넬라·대장균 O157:H7(미국), BSE 발생 저감화(EU)

* DNA분석 등 과학적 기반(일본), 건강한 식습관·고영양식품 효용 제고(미국) 등

○ 신종 위해요소 평가 및 위해성평가를 위한 역량제고 강화

* GMO·사료 평가(EU), 위해예측 역량 확대(미국) 등

○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적용을 강화

* 위기대응연습(일본), 긴급한 과학적 자문 신속대응(EU), 범죄세력의 엄중 처벌(중국) 등

○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

* 전문가 네트워크(EU), 사건처리 실시간 보도 등 유리한 여론 분위기 조성(중국) 등

다. 국가간 식품안전관리 수준 비교

지 표 명	우리나라	EU	미국	일본
· 식품안전 국민신뢰도	62.7%('10) * '보통' 수준 미포함시 15.1%	64% (‘09, 영국)	81%('08)	23.2%('09)
· 관리대상 유해물질	1,930개('10)	1,882개	1,054개	1,844개
· HACCP 적용업소비율	5.2%('10)	모든 제조업소에 적용토록 권유 ('06)	7.4%('05)	4.1%('08)
· GMO 식품 표시제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GMO 사용 가공식품	표시안함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
· 식중독환자수/ 백만명당	143명('10)	94명('08)	119명('08)	174명('10)
· 과학적 위해평가위원회	위생심의 위원회 (식품/축산물)	유럽 식품안전청/ 과학패널	발암평가위원회 · 정량적위해 평가위원회	식품안전 위원회
· 위해사범에 대한 형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실제처벌은 대부분 벌금 200~300만원	2년 이하 징역 또는 4천만원이하 벌금 (영국)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불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구제제도	단체소송제*	단체소송제 (독일, 프랑스)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

(자료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식품안전관리추진전략과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2011)』

*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와 같은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전략기본방향 및 비전

가. 추진전략

- (先制的 對應)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안전 위해요소의 사전관리 및 예방
 - 식품 신기술 발달과 기후변화, 식품수입증대 등 새로운 식품 여건 및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HACCP·GAP 등 사전예방체계를 보다 내실화
- (力量 強化)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분석(위해성 평가, 위해 관리, 위해정보교환)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관리역량 강화
 - 전문성 및 기술확보를 위한 R&D 확대 및 내실화, 전문교육 과정을 통한 인력 배양, 유해물질 정기 평가 체계 구축
 - * 식품안전성 평가기술은 기술최고국인 미국과 7.6년 차이(과학기술평가보고서, '09)
- (疏通 強化) 식품안전 이해관계인(소비자, 학계 전문가, 식품업계 등)의 식품정책 참여를 강화하고 적극적 의사표현 기회 제공
 - 식품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홍보 필요
 - * 불안감은 개선('08: 69%→ '10: 37.3), 신뢰도는 15.1%로 낮은 수준(통계청, '10)
 - 식품관련 국제기구와 정보소통, 위협대처 등을 위한 공조 체계 강화
- (食生活 改善) 건강한 식품 문화로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
 - 어린이·여성·노인 건강 및 국민 영양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나. 분야별 기본방향

□ 선제적 위해관리 강화

- 식품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및 수입 등 단계별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을 강화
- 기후변화 및 신기술 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체계 구축

□ 과학적 위해성 평가 강화

- 위해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 및 연구개발, 전문교육·훈련 강화
- 위해성평가 내실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공유·관리 및 국내 전문가 그룹의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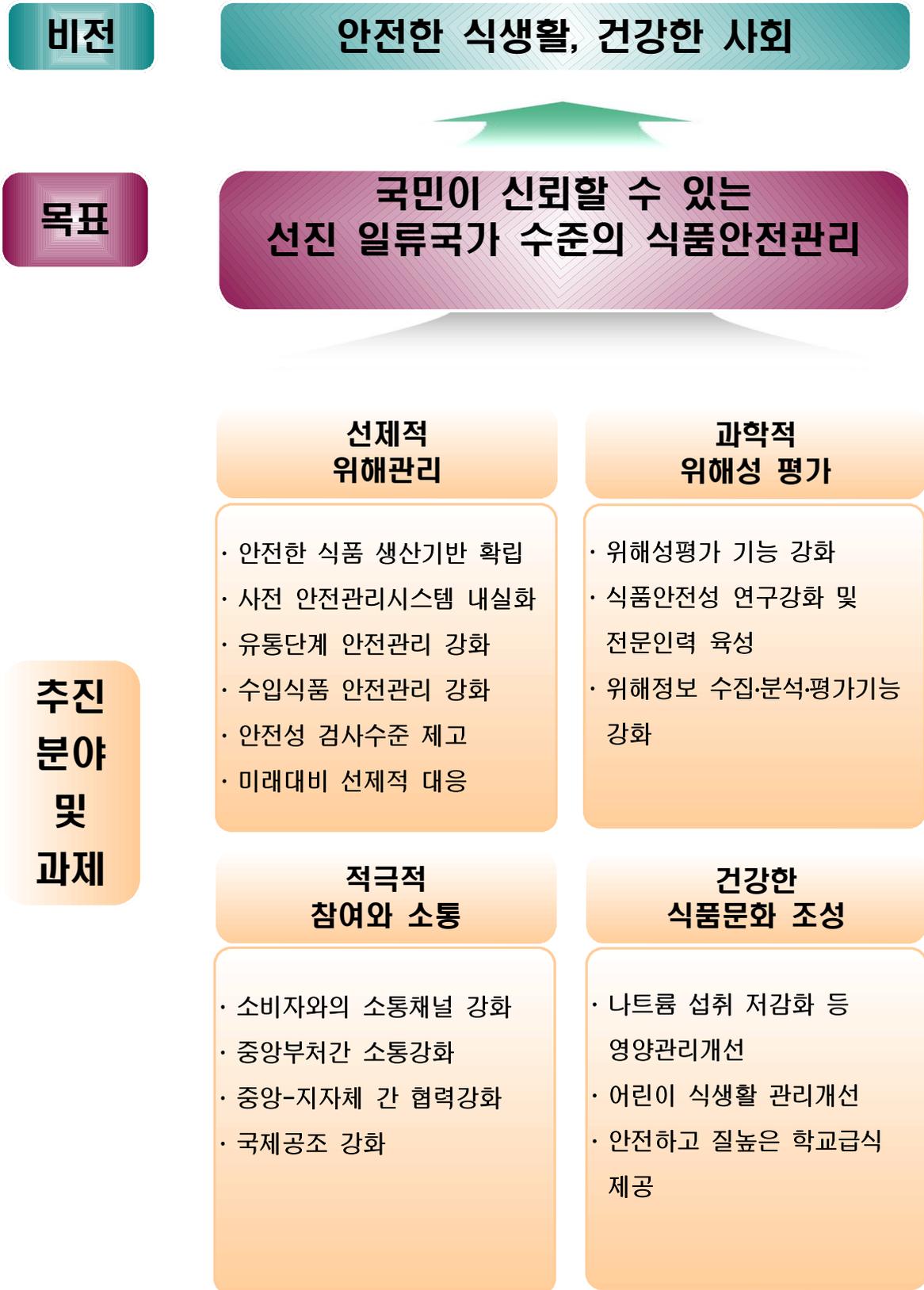
□ 적극적 참여와 소통 강화

- 민간의 정책참여 및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민간-정부간 소통 기회를 지속 확대
- 국가간 식품안전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지속 확대

□ 건강한 식품문화 조성

-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 관리 등에 역량을 보다 집중
- 어린이·학생·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관리 중점 강화

다. 비전, 목표 및 추진분야



3 주요 과제별 목표치

분 야	주요지표	'11(현수준)	'12	'13	'14
(누계)					
선 제 적 위해관리	GAP인증 농가 비율(%)	3('10)	5	7	8
	HACCP인증(%) : 축산물 일반식품	75('10) 5.2('10)	79 11	82 15	85 20
	GHP 도입률(%)	-	-	20	30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 시스템 도입율(%)	대형유통업체 100	중소유통업체 15	중소유통업체 30	중소유통업체 40
	식중독 원인 규명률(%)	61('10)	63	65	70
	유해물질기준 설정건수	200('10)	350	510	680
	농산물 이력정보 전산관리 비율(%)	7.3('10)	12	15	18
과학적 위해성 평 가	생산단계 잔류농약 허용 기준 설정 연구(건)	100	200	300	400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 범위 확대	3	3	4	5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안전 기준 DB구축(%)	-	70	90	100
	농약 재평가 건수(건)	-	60	90	120
적극적 참여와 소 통	국내외 네트워크 정보교류 기관·업체수(개)	53	60	65	70
	식품안전관련 토론회 개최(건)	-	10	20	30
	식품 위해정보 활용도*(%)	11('10)	15	15 이상	15 이상
건 강 한 식품문화 조 성	급식업체의 저나트륨화 참여(개소)	800	1,000	1,200	1,400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전년 대비 증가율(%)	-	10	20	30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율(%)	43('10)	-	-	64
	관리대상 보육시설 등의 아동수 대비 지원율**(%)		18	28	37

* 식품위해정보 활용도 : 수집된 정보 중 심층 분석 후 제공되는 정보건수 비율

** 센터수 × 센터당 관리급식소 수 × 급식소 당 평균 관리아동 수 / 560,000 × 100(%)

IV. 제2차 기본계획 세부과제

1 분야별 주요내용

- ◎ 위해관리분야 : 24개 과제, ◎ 위해성 평가 분야 : 6개 과제
- ◎ 참여와 소통 분야 : 10개 과제, ◎ 식품문화 분야 : 9개 과제

가. 선제적 위해관리 강화

□ 사전 안전관리시스템 내실화

- HACCP 의무적용대상 확대 및 특별검증체계 마련
- GAP 참여 유도를 위해 GAP 인증품의 학교급식·대형마트 공급 확대 추진
- HACCP 적용이 곤란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GHP를 도입하고, 영세 식품제조업체의 적용을 의무화

□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 원산지 단속 효율화를 위해 DNA 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 개발 확대
 - * ('11년 활용 현황) : 농산물 2개(쌀, 쇠고기), 수산물 25개(갈치, 고등어 등)
- 위해식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중소 유통업체까지 확대
 - * 중소유통업체 적용(%) : ('12) 15% → ('13) 30 → ('14) 40
 - * 자동차단시스템 : 위해식품정보의 실시간 전송으로 계산대에서 판매 자동 차단
- 식품사범 처벌강화를 위해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 병행

□ 수입식품 안전관리

○ 수출국 위생관리실태 사전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강화

* 수입자의 수출국 제조업체 정보제출 의무화, 부적합 등 사건·사고 관련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등

○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수준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 수출국 DB 구축(연수출 50건 이상, %) ('12) 20 → ('13) 60 → ('14) 90

○ 부적합 이력이 높은 수입업체 및 식품의 검사 강화, 유통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통한 유통경로 추적 강화

□ 미래대비 선제적 대응

○ '기후변화대응 연구사업단 운영(식약청)' 및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해요소 영향분석 추진

○ 나노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 국제적 정보교류 체계 등 구축

* 국제적으로 칼슘, 비타민, 피토스테롤, CoQ10 등을 나노화한 제품 개발중

○ 수입산 및 국내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 및 식품 안전 신속대응 매뉴얼 개발

○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안전성 재평가 등 관리 강화

나. 과학적 위해성 평가 강화

□ 식품안전성 연구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인적자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연수 · 전문교육 · 훈련
- 미생물 기준의 정량화 등 식품안전 기준 · 규격의 선진화 및 유해물질 검출기법 · 안전성 모니터링 등 연구강화

□ 위해정보 수집 · 분석 기능 강화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간 정보 교류 협의체 및 국내 전문가 그룹의 적극 활용
 - * INFOSAN(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하는 국가간 식품안전 긴급정보교류 네트워크(177개국 참가)
- 잠재적 문제 발굴을 위한 과학적 · 심층적 정보 분석 체계 강화
 - * 식품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해정보평가모니터단」 구성 · 운영

□ 위해성 평가 기능 강화

- 위해 민감층(영아 · 임신부 · 수유부)의 식품섭취량 조사 등 유해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성평가 기반 강화
- 국민의 식생활 변화 등을 반영하여 유해물질의 주기적 재평가
 - * 중금속 · 곰팡이 · 신종물질 등의 오염도 및 섭취량 조사를 통한 재평가

다. 적극적 참여와 소통 강화

□ 소비자와의 소통채널 확대

- 유사 인증제도의 단계적 통폐합(현재 18종 → '13년 8종)
- 식품안전정보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및 효율적 운영

□ 중앙부처간 소통 강화

- 관계부처 정책담당자간 협의체 적극 참여 및 사전협의 강화
 - * 총리실 주관으로 워크숍 등 정기 협의체 구성·운영
- 유해물질 프로파일(profile) 등 식품안전정보 공유 활성화

□ 중앙-지자체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 중앙·지자체간 기능별 역할 분담 및 상시 협력체계 강화
 - * (중앙) 지침 마련, 종합계획 수립 등 - (지자체) 인허가, 세부계획 수립 등
- 합동점검 및 감시·단속 인력 상호지원 등 유기적 협조 강화

□ 국제공조 강화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식품안전규격 설정 등에 적극 대응
- 국가간 위생약정(MOU) 체결 등 상호협력체계 강화

라. 건강한 식품문화 조성

□ 나트륨 섭취 저감화 추진

- 사회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약청)
 - * '나트륨 줄이기 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 개최('11.12월)
- 외식의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한 나트륨 함량 표시확대
 - * 김가네, 명인만두, 놀부 부대찌개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상
- 저나트륨 메뉴 주간 확대 및 가정식 저나트륨 레시피 보급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 확보

- 안전성·기능성 확보를 위해 제조·유통·수입 기반 강화
- 「기능성평가센터」를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 선도(농식품부)

□ 어린이 식생활 관리 개선

- 우수판매업소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으로 지정범위 확대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공표를 통한 안전환경 개선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 투명성·안전성을 위해 비대면 전자계약 및 공동구매 확대
 - * 전자조달 비율 : ('10) 51.3%(4,689교) → ('14) 70.0%(7,900교)
- 영양관리기준 준수 및 식단공개,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 도입

2 과제별 세부추진내용

1. 선제적 위해관리 강화

1-1.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1-1-1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관리

1. 배경 및 필요성

□ 생산환경 관리를 통해 위해요소를 차단

- 농지·용수 등의 잔류유해물질의 농산물로의 전이 가능성 억제, 축사·해양지역의 사육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2. 추진계획

□ 농지·용수 등의 관리 강화

- 재배환경의 유해물질 오염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기준 설정
- 폐광산 등 오염우려지역 농지·농산물 중금속 조사 강화
 - * 폐광산 반경 2km → 6km로 조사범위 확대

□ 가축 사육환경 개선

- 노후화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 지원 규모 : ('11) 669개소/1,633억원 → ('12) 매년 1,350개소/2,760억원
-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허가제 시행

□ 수산물 생산해역 관리 강화

- 패류 등 수산물의 생산해역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 패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생산지정해역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농약·동물용의약품의 불법유통·오남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 지속

-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 해소

* 부정불량농약 적발건수 : ('07) 36 → ('09) 45 → ('10) 52

2. 추진계획

□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단속 및 안전교육 강화

- 성수기 등 특정시기에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단속 및 품질검사 강화
- 농약 판매관리인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의무화

□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리 강화

- 기허가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확대
- 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 확대 등 재심사 제도의 정착 및 체계적 관리

□ 우수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품질 관리

- 품질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지속 추진 및 제조업체의 자율 점검 확대

* ('11) 사후관리 25개소, 자율점검 50% → ('12년 이후) 25개소 유지, 60%이상

- 제조·품질관리 우수업체(KVGMP) 운영 선진화로 품질 향상

1. 배경 및 필요성

□ HACCP을 적용중인 일반 배합사료(농후사료) 이외 한우·젓소를 주대상으로 하는 혼합사료(TMR)의 공급 증가

○ 소비가 증가하는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TMR 사료의 품질·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적용

* TMR(Total Mixed Ratio)사료 : 조사료·농후사료·첨가제 등을 적절히 혼합한 섬유질 혼합사료로서 156개 공장에서 생산 중('11년 현재)

* TMR사료 급여 추이 : ('05) 한우 4%, 젓소 32% → ('10) 한우 12%, 젓소 34%

* 배합사료 HACCP : '05년 도입, 배합사료공장(96개) 중 87개(91%) 적용 중

2. 추진계획

□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HACCP지정 확대

○ TMR사료공장 HACCP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 및 지정 추진

* TMR 사료공장 HACCP 지정 : ('12) 2개소 → ('13) 15 → ('14) 45

○ 품질·위생·안전성 관리를 위한 HACCP 운영실태 정기심사

□ 사료의 품질·위생관리를 위한 안전성 검사 확대

○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서의 사료 시료 채취 및 검사

* 사료 검사물량(건) : ('12) 4,000 → ('13) 4,100 → ('14) 4,200

1. 배경 및 필요성

- 도축·유통단계의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도축장 위생상태 개선·도축검사 강화·유통관리 등 안전대책 추진
 - 도축장의 영세성·과당경쟁 등으로 경영 여건이 부실하게 되어 위생시설의 투자 미흡, 위생 상태에 대한 소비자 우려 집중

2. 추진계획

-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등 추진
 -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운용, 장기휴업 도축장의 허가취소, 폐업도축장 부지의 타 용도 전환 등 조치
 - 도축장 영업자 위생책임 강화 등 위생관리 강화 대책 추진
- 도축 세부검사기준 개선 및 도축검사 역량 강화
 -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개선
 - 질병분류표 개정 및 축산농가 피드백시스템 마련
 - 검사인력 확대 계획 수립 및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확대
- 축산물 부정유통 방지 및 위생관리 강화
 -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감시 및 수거검사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먹는 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제 수준의 물 관리기준 강화 필요

- 수돗물 · 지하수 ·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기준 · 노로바이러스 · 미량 유해물질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강화

*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 '09년 32건, '10년 31건

2. 추진계획

□ 수돗물 미규제 미량 유해물질 관리 강화

- 주요 정수장 및 4대강 원정수 등 대상 모니터링 강화
 - 국제 수준으로 수질기준 · 감시항목 확대 및 측정분석수준 등 향상
- * 3년간 전국 35개 정수장 및 4대강의 분기별 수질검사를 통해 중점감시항목 지정

□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관리 강화

-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및 지하수 오염원 관리 강화
- 지자체 대상,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관리방안 등 교육 강화

□ 먹는 샘물 품질 · 안전성 관리 강화

- 수질감시항목 확대 · 제조업체 지도점검 등 품질관리 강화
- * 포름알데히드('10) 이외 우라늄을 추가로 감시항목으로 지정 · 관리
- 샘물의 수량 · 수질변화 등 모니터링 강화 및 자동계측 실시
- * 자동계측자료 실시간 온라인 전송시스템 구축
- * 샘물 · 먹는샘물 수질 측정자료 등에 대한 DB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전통주 소비 및 수출 증가 등 주류산업 성장에 따른 주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주류안전기준·제도 등 관리기반 강화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생성차단·저감화 등 안전관리 수준 향상

* 시장규모('10) : 7조9천억원(맥주 3.5조, 소주 2.6조, 탁주 0.4조, 기타 1.4조)

2. 추진계획

□ 주류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기준규격 제·개정

- 국민의 음주형태와 음주문화 변화에 따른 주류 소비·섭취 실태 조사 및 유해물질 모니터링 실시
- 주류별, 유해물질별 섭취수준 재평가를 통한 기준·규격 제·개정

□ 주류 제조업체 위생수준 향상

- 정기 위생지도·점검 강화, 미흡업소 중점관리 등 지역거점 관리 체계 도입

* 지도·점검 대상업체 점검율(누적) : ('12) 60 → ('13) 90 → ('14) 100

- 주류 HACCP 적용업체 확대 등 주류 안전제조기반 강화

□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기술지도 등 지원 확대

- 과실발효주·증류주 중 원료·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에틸카바메이트 등) 저감화를 위한 업체 기술지도 등 지원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친환경·웰빙 등 안전·안심 먹을거리에 대한 요구 증대

-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인 안전 관리와 공급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무농약이상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 ('12) 8 → ('13) 9 → ('14) 10

2. 추진계획

□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관리 시스템 구축

- 민간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로 인증업무의 투명성 제고
- 재포장 유통업체에 대한 의무인증제 추진
-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불량자재 유통 사전 차단

□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및 유기농 전문단지 육성
 -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누계) : ('11) 34개소 지정 → ('15까지) 60개소
-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비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토양 지력 증진 및 비료사용량 절감 추진
 - *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 매년 3%이상 감축

1-2. 사전 안전관리시스템 내실화

1-2-1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1. 배경 및 필요성

- 생산·유통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제도의 참여 농가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 대비 적용 비중은 저조
 - GAP 활성화의 장애가 되는 요인을 도출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 : 50개 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되고, 수확 후 우수시설 저장 및 이력추적관리가 되는 경우 인증
 - * 인증농가('10) : 34천호(전체대비 3%), 생산량 : 51만톤(3%)

2. 추진계획

□ GAP인증 확대 및 위생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품목별 GAP 심사기준을 마련, 농업인의 GAP 제도 참여 확대
- 목적 달성이 가능한 수준 내에서 이력관리 내용·절차 간소화
- 소규모 자가 시설에 적용 가능한 GAP관리 시설기준 마련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체계 개선

□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GAP 농산물 공급 활성화

- 홍보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 학교급식, 대형마트 등에 GAP 농산물 공급·소비 활성화 추진
 - * GAP 인증농가비율(%) : ('12) 5 → ('13) 7 → ('14) 8

1. 배경 및 필요성

- 생산에서 소비까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HACCP의 적용을 확대하여 식품위생수준의 지속 향상 필요
 - HACCP적용업체 확대를 위한 의무적용 등 제도개선,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강화
 - * 식품제조가공업체 HACCP 적용(10) : 1,153개, 전체의 5.2%수준
 - * 축산물가공업체 HACCP적용(10) : 3,851개, 전체의 5.1%수준

2. 추진계획

- HACCP 의무적용 지속 추진 및 제도개선
 - HACCP 지정업체 및 의무적용 대상 확대 지속 추진
 - 농장 및 중소규모 업체 등을 위한 맞춤형 HACCP 인증기준 마련
 - 업종별 위생수준·국민만족도 등 평가지표 개발 및 기준·심사방법 개선
- HACCP 위해분석 인력양성 및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평가·위해분석 실무교육 및 지역별 맞춤형 기술지원 등 확대
 - 중소규모 업체 HACCP 컨설팅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비 지원
-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 강화
 - HACCP운영 검증대상 확대 및 운영능력 현장지도 등 조치강화
 - 위해발생 가능성, 생산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적 사후관리 및 관리기준 미준수 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증체계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HACCP 도입이 어려운 영세한 식품제조업체에 적용 가능한 GHP 도입을 의무화하여 식품산업 전반의 위생수준 향상 필요

○ 식품안전시설·관리프로그램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영세 업체에 GHP를 의무화하여 식품안전 사고예방 및 위생관리 개선

* GHP(Good Hygiene Practice, 우수위생관리기준) :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시설기준, 위생관리절차 등에 관한 기준

* 5억원 미만 영세 식품제조업체수('10) : 15,151개(전체의 80.2%)

2. 추진계획

□ GHP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식품영업 신고제를 사전에 현장 확인하는 등록제로 전환

○ 선진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재정비하여 선진국 수준의 GHP 적용 기준 법제화

□ 식품제조업체 GHP 적용 의무화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신규 영업자의 GHP 의무 적용 추진

- 기존 영업자는 일정 유예기간(3년) 내에 새로운 GHP 기준 적용

1-3.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1-3-1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

1. 배경 및 필요성

-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여건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등 대응 필요
 -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를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등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법 개발 및 원산지 단속 효율성 강화

2. 추진계획

-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확대
 - 원산지 표시방법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표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 *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안 도출('11년) → 관련규정 개정 및 시행('13년)
-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법 개발
 - 농수산물 DNA 식별방법 개발
 - * 농산물 : ('12) 3개 → ('13) 5개 → ('14) 7개 / 수산물 : ('12) 27개 → ('13) 29개 → ('14) 31개
 - * DNA식별법 활용('11) : 농산물 2개(쌀, 쇠고기) 수산물 25개(갈치, 고등어 등)
- 원산지 위반 단속 효율성 강화
 - 식품검사·이력·공매정보 단속활용 및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 선정 확대
 - * 검사·이력(검사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공매(농유공) 전산 연결망 구축
 - * 우수업체 선정확대 : ('12) 1,800개 → ('13) 2,000개 → ('14) 2,200개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 이력추적제 활성화 및 위해식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도입을 확대하여 신속회수 역량강화 필요
 - 식품이력 기록·관리 강화로 안전성 문제발생 시 원인규명 및 회수·폐기 등 조치 활성화

2. 추진계획

- 식품 이력추적제 활성화
 - 단계적 우선 적용 대상식품 연차적 확대 및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 수입쇠고기('11), 가공식품('12~), 돼지이력제('14) 등
 - 중소기업체·물류·유통업체 이력추적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위해식품판매 자동차단시스템 도입 확대
 - 대형 유통업체 도입을 '11년도에 완료하고, 중소 유통업체까지 확대
 - * 중소유통업체 적용(%) : ('12) 15% → ('13) 30 → ('14) 40
 - * 자동차단시스템 :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업체에 실시간 전송하여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활용하여 판매를 자동 차단
- 위해식품관련 정보 공개 확대
 - 회수정보 등에 대한 TV 자막방송 및 SMS 서비스 제공 확대
 - 식품사고대응 가상훈련(CPX) 실시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사범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사회문제화
 -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사범에 대한 강력대응 및 근원적 차단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필요

2. 추진계획

- 기관별 공조 및 실시간 수사지휘체제 확립을 통한 체계적 단속
 - 검찰청, 식약청 등 유관기관간의 공조를 통한 체계적 단속 실시
 - 실시간 수사지휘 체제 확립
- 식품사범 처벌강화 및 재범 방지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사범으로 인식, 엄정처리 원칙 고수
 - 형사처벌 이외에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 병행
 - 관련기관 통보 인허가 취소, 영업지속 방지 등 행정조치
-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 식품관련 특사경 교육, 선진국 사례 연구를 통한 수사기법 향상
 - 국제 공조 수사체제 확립
 - 식품사범 우수수사사례·기법 등을 발굴·표창하고 사례 전파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증가와 식자재 대량유통으로 대규모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 확산

- 식중독균의 오염원과 특성을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식중독균별 맞춤형 저감화 방안 마련 필요

* 집단급식소 환자비율(%) : ('08) 48.3 → ('09) 57.3 → ('10) 58.0

2. 추진계획

□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예방관리 강화

- 중앙부처·지자체·민간 합동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 마련

* 학교급식소 식중독예방, 지하수 오염방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대책 등 연계 추진

□ 식중독 원인규명을 통한 과학적·체계적 관리

- 이동식 식중독 검사실에서 신속 현장조사 체계 구축·운영
- 식중독균 추적관리시스템 확대 및 「생물안전실험실(BL3)」 운영
- 식중독 원인균 검사 확대 및 원인조사 담당관 조사능력 강화

* ('10) 식중독균 10종, 바이러스 1종 → ('11~'14) 식중독균 16종, 바이러스 6종, 원충 4종

□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강화

- 식중독 예방 교육자료 지속 개발·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 지자체별 '식중독예방 체험교실' 운영 및 모바일 활용 홍보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지하수 이용 집단급식소에서 노로바이러스 지속 검출

- 학교의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개선되었으나, 기업체 등의 급식소에서 검출률이 높고, 시중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 지속 검출
 - * 검출률 : 학교 ('09)3.3%→ ('10)0.7%↓, 기업체 ('11)1.9%, 유치원 ('11)20%
 - * 주요 생산지와 유통업체 생굴 조사결과에서 54%(26건/48건) 검출('10.12)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필요

-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로 처리된 식재료나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 등을 취급·섭취하는 과정에서 감염·교차오염 우려

2. 추진계획

□ 지하수 이용 집단급식소 등 노로바이러스 중점 관리

- 사회복지시설, 기업체까지 검사 확대, 부적합 시설 개선조치
 - * 급식소 노로바이러스 조사건수 : ('12) 2,200 → ('13) 2,000 → ('14) 2,000
- 노로바이러스 살균·소독 지침(매뉴얼) 제작·배포

□ 유통식품의 노로바이러스 중점 관리

- 지하수 이용 비가열섭취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생굴 등 패류 대상 중점 검사, 표시제 의무화 등 안전관리대책 강화 검토
- 지하수 사용업체에 살균·소독 시설 구비 의무화 추진

1-4. 수입식품 안전관리

1-4-1

생산지역 · 수출지역 안전성 확보

1. 배경 및 필요성

- 수출국의 생산 · 수출업체 등의 위생관리실태를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되도록 관리 강화 필요
 - 수입식품의 수출국 생산 · 제조단계에서부터 현지실사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 추진계획

- 수출국 위생관리실태 사전확인을 위한 현지실사 강화
 - 현지실사 원칙 및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효율성 도모
 - * 수입자의 수출국 제조업체 정보제출 의무화, 부적합 등 사건 · 사고 관련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 등
 - 수입식품 기준·규격 조화 추진 및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강화
- 수입식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DB구축 및 제조업체 등급화 마련
 - * 식품안전정보센터, 해당국 주재원, KOTRA, 유학생 등과 연계한 현지정보 수집
 - * 주요수출국(연간수출 50건이상) DB구축(%) : ('12) 20 → ('13) 60 → ('14) 90
 - 수출국 위생관리 시스템에 대한 동등성 평가 등 시스템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수입식품 지속 증가 및 수입자 불성실 신고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책임 부족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물량 지속 증가
 - * 수입건수 '00년 134천건 → '10년 294천건(119% 증가)
 -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 독일 장출혈성 대장균 및 미국 리스테리아 식중독 등으로 인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추진계획

-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자가 제출한 신고정보의 정확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신고 평가제 운영
 -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검사명령제” 및 부적합 식품 수입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운영
-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부적합식품 수입차단 강화
 - 유해성분함유·성분미기재 식품 등에 대한 분석·검사 강화 및 해당 물품의 긴급통관보류 강화
 - 벤조피렌, 다이옥신, 식중독균 등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수입통관 검사 강화
 - 검사단계(서류·관능·정밀검사)별 부적합 예측 기능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의 유통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운영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

- 수입 통관단계 검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중 유통·판매단계에서 수입식품 검사 강화 필요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 가공공장 등) 시행 ('10.12)

2. 추진계획

□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강화

- 수입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국제적인 식품사고 이슈 발생시 해당 수입식품 수거·검사 실시
- 부적합 이력이 높은 수입업체 및 품목에 대한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강화

□ 수입식품 유통경로 추적체계 강화

- 수입쇠고기 등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위해 발생 시 신속한 회수·폐기 조치
- 부적합 이력이 높은 수입식품 및 상습·고의적 수입통관 위반업체 식품에 대한 유통경로 관리 강화

□ 수입식품의 원산지 단속 지속 실시

1-5. 안전성 검사 수준 제고

1-5-1

식품위생검사기관 신뢰도 제고

1. 배경 및 필요성

□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정확하게 측정·분석,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검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검사기관 관리체계 확립

○ FTA체결 확대 등으로 수입물품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수입검사결과 부적합률도 상승될 것으로 예견

- 부적합 제품의 폐기·반송 등 조치 시 무역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검사방법 및 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 필요

* 시험검사 결과로 인한 분쟁해결 지침 시행(Codex, '09.7)

2. 추진계획

□ 국제적 수준의 검사 운영시스템 구축·운영

○ 식품위생검사기관 대상 우수 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 보급·운영

* 우수시험검사기관 보급률(%) : ('12) 40 → ('13) 70 → ('14) 100

* 우수 시험검사기관 : 식품위생검사 분야 시험검사 기록물 및 문서관리의 표준화, 검사장비 검·교정 및 내부 점검 등 검사의 품질보증 체계를 운영하는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 과정 운영

□ 선진화된 검사능력평가 프로그램 운영

○ 국내 검사기관 대상 선진 검사시스템평가 프로그램 운영

○ 국외검사기관 대상 검사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성 검사결과에의 객관성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및 선진국 수준의 검사계획 수립 필요

2. 추진계획

□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 범위 확대

-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인구비례에 따른 조사물량 배분 및 Codex 추출방법 등 활용

* 농산물 : ('12) 3개 분야(잔류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 / 16,000건

→ ('14) 5개 분야(방사능·잔류성 유기물질 추가) / 20,000건

□ 신뢰도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 검사과정 등 검사의 적절성 여부를 담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프로토콜 확립
- 첨단 정밀검사 장비 도입 및 분석정밀도 평가

□ 선진국 수준의 잔류물질 검사대상 설정 및 검사계획 수립

- 검사항목 그룹별 위해도 우선순위 및 검사물량 재검토
- Codex·EU 기준 등과 비교하여 선진국 수준의 검사계획 수립

1-6. 미래대비 선제적 대응

1-6-1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문제 대두

- 기후 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온도·습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식중독 등 질병확산 우려

* 미국 CCSP(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SAP), CCTP(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등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2. 추진계획

□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 예측 및 영향평가

-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사업단 관리·운영
- 기후변화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통계기반 구축

□ 기후변화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해요소 영향분석 및 관리

- 기후변화에 따른 미생물, 유해중금속 등 관리·영향분석
- 생물·화학적 신속검출법 개발 및 신속 관리 방안 마련

* 위해요소 영향분석 관리기술 개발건수 : ('12) 2 → ('13) 5 → ('14) 10

□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제고 및 관리체계 구축

- 위기경보체제 반영, 국내외 위해정보 교류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위생관리기술 개발 및 관리 개선(안)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나노기술을 응용한 신소재식품 연구·개발이 국제적으로 활발하나 안전성 논란 지속

○ 나노기술 응용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

* 국제적으로 칼슘, 비타민, 피토스테롤, CoQ10 등을 나노화한 제품 개발중

2. 추진계획

□ 나노기술 응용식품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자문위원회를 통한 나노기술 응용식품 정의 마련
○ 안전성 자율평가지침 등 마련

□ 나노기술 안전성 평가 선진화 기반 마련

○ 나노기술 응용식품의 분류체계 마련
○ 생체 내 물질과의 상호작용 등 독성자료 생산

□ 나노기술 정보교류체계 구축

○ OECD, WHO 등 최신 정보 및 동향 분석을 통한 국제 조화

1. 배경 및 필요성

□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확산

- 일본 후쿠시마현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11.3) 발생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의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 일본산 수입건수는 46,350건('10)으로 중국 다음으로 2위 차지(전체 15.8%)

□ 핵실험과 인접국가 원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필요

- 원전사고 등으로 방사능이 대기 및 지하수를 통해 국내에 오염 확산이 우려되므로 가상의 안전성 평가 요구

2. 추진계획

□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 일본산 수입식품의 철저한 정밀검사 체계 유지
- 방사능 핵종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 태평양 연안국가 등 주변지역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실시

□ 국내산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평가

- 국내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방사능 모니터링 수행
- 국내 유통식품 중 방사능 안전성 평가

□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체계 구축

- 방사능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는 식품안전 신속대응 매뉴얼 개발

1. 배경 및 필요성

-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표시제 확대 등 관리체계 강화 필요
 -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표시제 확대, 안전성 재평가 실시 및 이력관리제 마련 등 유전자재조합식품관리 강화 필요

2. 추진계획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제 확대 및 관리제도 개선
 - 유전자재조합 원료 사용 식품의 표시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 추진
 - * 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용 가능한 표시제 운영 방안 강구
 - 이력관리제 및 구분유통증명서 사전등록제 도입(안) 마련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
 - 승인 후 10년 경과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실시
-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
 -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일반인 대상 현장체험학습 확대 실시

2. 과학적 위해성 평가 강화

2-1. 위해성 평가 기능 강화

2-1-1	식품 위해성 평가 관리 강화
-------	-----------------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 위해예방시스템 선진화 및 신종 위해요소 평가기술 확보 등 위해성 평가 관리 강화 필요
 - 위해성 평가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위해프로파일 작성 및 유해물질 인체노출안전기준 DB구축 등 위해성 평가 기반강화

2. 추진계획

- 위해성 평가 정보의 체계적 관리 강화
 - 중금속, 미생물, 잔류농약 등 분야별 위해프로파일 작성
 -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과의 연관성 확인 및 위해성 평가 지침 마련
- 과학적 위해성 평가 기반 강화
 - 위해 민감군(영아, 임산부, 수유부)에 대한 식품섭취량 조사
 - 인체노출안전기준 DB구축, 모니터링 등 관리시스템 고도화
 - 위해요소 노출량 평가모델 개발
- 위해요소별 특성 규명 및 위해성 평가 기술 확보 활성화
 - 다빈도 검출 및 고위험도 위해요소 특성 규명
 - 신종 위해요소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위해성 평가 기술 확보

1. 배경 및 필요성

- 국민 식품 섭취량·식생활 변화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인 유해물질 노출량 재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유해물질 관리

2. 추진계획

□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 식품 섭취량·식생활 변화 및 해당 식품의 유해물질 잔류 모니터링을 통해 총 노출량 평가

< 주기적 유해물질 재평가 체계 >

구분	'12년~'15년(1~4년차)	⇒	(5년차)	…반복
중금속	오염도 및 섭취량 조사	⇒	재평가	
곰팡이독소			재평가	
기타 오염물질			재평가	
신종유해물질			재평가	

□ 농약·동물용의약품·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재평가

- 농약·동물용의약품의 독성 및 작물 잔류성 자료 등을 통한 재평가
- 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저위해 식중독균의 순차적 정량규격 확대
- 식품첨가물의 섭취량 조사 및 독성 평가 등을 통한 재평가
 - * ('12) 보존료 등 22건 → ('13) 감미료 등 15건 → ('14) 착색료 등 15건
-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통한 재평가
 - * 합성수지에 대하여 매년 5종씩 재평가 실시

2-2. 식품안전성 연구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2-2-1 식품안전성 연구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신속 검출기법, 기준·규격 선진화, 안전성 모니터링 등 연구 강화 필요
 - 유해물질 등에 대한 잔류실태 파악, 시험법 개발·개선 등을 통한 생산 및 유통단계별 안전성 연구 강화

2. 추진계획

- 식품 중 유해물질 잔류실태 파악 및 시험법 개발·개선
 -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물질 및 국내외 이슈가 된 위해우려 물질의 잔류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 유해물질 모니터링 건수(누적) : ('12) 1,000 → ('13) 3,000 → ('14) 5,000
 - 신속한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법 및 잔류항생물질 신속다중 분석법 등 개발 등
-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 확대 및 취약분야 관리 강화
 - 화학물질 종합관리 기술개발 및 미생물 안전성 연구지원 확대
 - 식중독균의 식품별 정량규격 설정을 위한 연구 강화
 - 원자력발전소, 해양투기지역 등 환경오염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양식장 등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 말라카이트그린 등 사용금지약품, 패류독소·노로바이러스 등 조사

1. 배경 및 필요성

- 시험분석 물량 및 대상 유해물질이 매년 증가하여 연구인력 등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 등 강화 필요
 - 선진국 분석기술 습득 등을 위한 연수 및 전문교육·훈련 강화

2. 추진계획

- 식품 안전성 분석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국내 전문기관 교육 및 선진 외국 분석기술 습득 등을 위한 연수 실시
 - 유해물질별 정도관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 공인기관에 위탁 실시
- 위생관리·정밀검사 교육 강화
 - 식품위생관리 담당공무원, 식품위생검사기관 분석연구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수행 및 전문인력 육성
 - * 국내 유해물질 분석 전문기관 교육, 선진 분석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 등

2-3.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기능 강화

2-3-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수입식품 의존도가 높아 세계 각국의 식품안전 사고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는 대응시스템 강화 필요
 - 국가간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 및 국내 유관기관 간 쌍방향 식품 안전정보교류가 부족

2. 추진계획

- Asia INFOSAN(가칭) 회의 개최 등 아시아 국가간 네트워크 강화
 - 아시아지역 위해정보교류협약체 구성 및 네트워크를 통한 식품 위해정보 상시교류 체계 구축 추진
 - * Asia INFOSAN 국제회의 개최, Asia INFOSAN 참여국가와 Hot-line 구축 방안마련 추진('12-'13)
 - * INFOSAN(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 WHO가 운영하고 세계 177개국이 참여하는 국가간 식품안전 긴급 정보교류 네트워크
- 국내 유관기관 등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등 정보교류 확대
 - 식품안전정보교류회의(농식품부, 식약청, 관세청, 서울시 등) 개최
 - 최신 정보동향, 각 기관별 식품안전관리 활동 등 발표 및 토론

1. 배경 및 필요성

- 외국 정부기관, 연구자료 등 발표된 정보 위주의 분석으로는 최신 위해요인과 잠재적 정보 발굴 한계
 - 잠재적 이슈 발굴을 위하여 다각적·심층적 정보 분석·평가를 위한 기능 강화 필요

2. 추진계획

- 과학적·심층적 위해정보 분석 평가시스템 강화
 - 사건정보, 정책 및 연구정보, 위해성평가정보 등 정보 유형별 심층 분석 등으로 과학적 분석 기능 강화
- 위해정보평가 모니터단 구성·운영
 - 주요 정보에 대한 과학적 근거마련 및 심층 분석·평가를 위하여 식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해정보평가모니터단」 구성·운영

3. 적극적 참여와 소통 강화

3-1. 소비자와의 소통채널 확대

3-1-1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	--------------------

1. 배경 및 필요성

- 성공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원활한 소통 및 공동 노력이 중요
 -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더욱 폭 넓게 정책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 마련 필요

2. 추진계획

- 소비자 참여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확대
 - 식품안전관리 현장체험 및 정책설명회 참여 확대
- 이해관계자 식품안전정보교류 활성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등 포함)간의 정보 교류망 구축
 - * 현장방문·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소통 확대 추진
- 식품안전정책 심의과정에 위원으로 참여 확대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위원선임 등 참여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정보의 제한된 공개로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사례 발생
 - 수입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지 식품안전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수집도 취약

2. 추진계획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어 식품안전정보 공개 확대
 - 계층별 눈높이에 맞춘 유해물질 정보 및 안전정책 등 제작·공유
 -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파
- 식품안전정보서비스 기능 개선 및 최적화
 - 식품 안전사고(사건)에 대한 소비자 불안 해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 국제 위해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참여방안 모색
 -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매체활용 전략수립 및 콘텐츠 개발

* 현재 식품나라(www.foodnara.go.kr), 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 운영 중
- 식품안전사고 조치내용의 실시간 공개 등 적극적인 소통
 - 소셜네트워크(SNS), 정책고객서비스(PCRM) 등 활용가능한 수단 이용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관련 인증제도가 지나치게 종류가 많고 품목별로 유사한 인증제가 세분화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
 -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고 생산자에게는 노력한 만큼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로 운영될 필요
 - * 인증목적, 대상품목에 따라 6개 법률에서 GAP등 18종의 인증제도 운영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외 기타 인증·표시에 관한 인지도가 낮음

2. 추진계획

- 유사 인증제도의 단계적 통폐합 및 공통표지(Logo) 도입
 - 18종의 인증제도를 '13년까지 8종으로 통합
 - 식별력 높은 공통표지(Logo)를 도입·시행('12)
 - 유사제도 통합, 공통표지 도입 등에 따른 생산자 부담완화 추진
- 인증기관 지정·관리기준 국제화 및 사후관리 강화
 - 국제화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유기식품 인증기준 반영
 - 인증기관의 책임성·독립성을 강화하여 인증기관 내실화 유도
- 식품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인증정보 통합사이트 운영, TV등 홍보성 높은 매체 활용
 - 변경되어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컨설팅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식품 표시기준과 조화를 통해 합리적인 표시기준 운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선택권 보장
 - 국제기구, 외국의 표시기준과 국내 식품간의 표시기준 조화 및 표시기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향상 도모

2. 추진계획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표시분과 대응 강화
 - 국제적인 표시기준의 변화를 파악하고,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의 조화를 수시 반영
- 식품 표시기준 지역 순회 설명회 개최
 -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제개정 표시기준 내용 등에 대한 지역 순회 설명회 수시 개최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정보가 전달되도록 중소기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을 위한 지역 순회 설명회 수시 개최
- '민원질의 응답집' 제작·배포
 - 표시기준 민원질의 및 운영사례 등을 주기별로 제작하여 소비자 업계 및 관계 공무원 등 이해도 향상

3-2. 중앙 부처간 소통 강화

3-2-1

식품안전 규정관리 협력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 등 28개 법령을 6개 부처에서 각각 관장
 - 유사·동일한 업무를 2개 이상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과 효율적인 감독에 애로
 - 식품안전 기준·규제 제·개정 시, 계획단계부터 관련기관과 자료 제공·의견교환 등 긴밀한 협력 필요

2. 추진계획

- 식품안전관련 법령 운영에 대한 관계부처 협력 강화
 - 식품안전관련 심의·협의체에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참여 확대
 -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 활성화
- 규정 제·개정 등 제도도입 시 사전협의 등 강화
 - 관계부처 및 소속 기관의 고시 제·개정 등 사전협의 강화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통한 제도도입 사전검토 등 협의·조정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관계부처간 식품안전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어 기준규격 및 법령 위반 정보의 활발한 공유 필요
 - 생산단계 안전 정보(농식품부) 및 수입·국내 유통단계의 안전 정보(식약청)에 대한 상호공유로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도모

2. 추진계획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관계부처간 공유체계 강화
 - 해외주재관, 식품관련 종사자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수시 공유
 - 관계부처별 식품안전 운영 웹사이트의 연계 강화
 - * 위해식품명, 생산자, 생산량, 유통경로 등의 정보 공유
 - 생산·제조·유통업체 등 지도·점검결과 공유체계 강화
- 유해물질 프로파일 등 자료 공유 확대
 - 식품안전에 영향이 큰 유해물질별 프로파일 등 자료 공유 확대
 - * 세균,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중금속, 자연독소 등 위해요소 프로파일 공유
- 정기적인 식품안전정보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식품안전포럼, 심포지움 등을 통한 부처간 정보교류 확대
 - 부처별 식품안전관련 연구회 등에 상호 참여하여 의견교환 확대
 - * 총리실 주관 워크숍 등 정기적인 협의체 추진 등

3-3. 중앙-지자체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3-3-1

식품관련 업체 등 위생관리 협력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변화하는 식품안전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 행정여건, 지도·점검업무 특성, 식품안전관리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 신속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중요

2. 추진계획

- 식품관련 업체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 협력체계 강화
 - 중앙·지자체간 기능별 역할분담 및 상시 협력체계 강화
 - * 중앙부처 : 관리지침 제개정, 종합계획 수립 및 특별기획점검 등
 - * 지자체 : 관내업체 인허가, 세부계획 수립 및 일상적인 점검 등
 - 전국합동점검 및 감시·단속인력 상호지원 등 유기적 협조 강화
- 식품안전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강화
 - 식품나라, 농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새올시스템 등을 통한 중앙·지자체간 안전정보 실시간 공유 확대
 - 식품위생업체 감시실적·생산실적 보고 등 식품안전 관련 통계 사이트(www.tfood.go.kr) 운영 등 협조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첨단기술·장비 등을 이용한 검사법 개발·적용에 따른 중앙·지자체 검사기관 간 전문성 동시 확보 등 협력 강화
 - 지자체 검사기관(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대한 검사장비 지원 및 협의체 운영 등 검사신뢰도 향상을 위한 협력

2. 추진계획

- 전문성 동시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 식품검사 분야 첨단 검사장비 보강을 위한 국고지원
 - 검사기관간 권역별 협의체 운영 및 사용법 공유 등 협조
 - 검사능력 관리 등을 통한 전문성 동시 확보
- 검사기관 간 지식·정보 공유체계 강화
 -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공유방 개설·운영 등
 - 국내·외 검사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3-4. 국제공조 강화

3-4-1

코덱스 등 국제공조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Codex 규격이 범세계적 식품 공통규격으로 활용됨에 따라 국제회의 참여 활성화 및 기준규격의 국제적 조화 확대 필요

- 식품 기준규격 제·개정시 코덱스 규격 반영 및 우리 고유 식품의 국제규격화 등 국제공조 활동 강화

〈Codex 규격 및 지침 설정 현황〉

구분	규격 (Standard)	실행규범 (Code of Practice)	지침 (Guideline)	회원국	분과위원회(29개)			
					일반국제 분과위원회	식품별 분과위원회	지역조정 위원회	정부간 특별위원회
개수	208	46	66	184개	10	11	6	2

2. 추진계획

□ 코덱스 국제회의 참여 활성화 및 국제 규격화 활동 확대

-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 의제 주도국 역할 수행
 - * WHO/FAO 및 호주(FSANZ) 영양전문가와 협의체 구성 등 정기 e-회의 개최
- Codex 식품 분류(안)에 식품분류 한·중·일 공조
 - * 대추(jujube)의 핵과류 제안, 감(persimmon)의 이과류 제안 등
- 잔류농약의 Codex 국제기준 설정 관련 연구 및 자료검토
 - * 인삼 및 인삼제품, 대추, 감에 대한 농약 기준 제안

□ Codex 규격 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활동 강화

- Codex 지침모음서 등 규격·지침 번역자료 발간·배포

1. 배경 및 필요성

- 수입식품 교역이 빈번하고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와 위생약정 체결 등 협력을 확대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 필요
 - 식품안전정보교환, 안전성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 조치 등 수입식품 안전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확대

2. 추진계획

- 수입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간 상호협력체계 확대
 - 국가 간 식품안전협력을 위한 위생약정 체결 확대
 - 식품안전 규정 및 위해정보교환 등 상호교류 강화
 - 안전성 문제발생 원인규명 등 개선조치 협력
- 수출국 소재 검사기관과 협력 확대
 - 기준규격 및 첨단 검사방법 제공 등 검사기관 간 협력
 - 연구인력 교차 연수 및 전문교육 실시

4. 건강한 식품문화 조성

4-1. 나트륨 섭취 저감화 등 영양관리 개선

4-1-1

국민의 나트륨 섭취 저감화 추진

1. 배경 및 필요성

□ 나트륨 과잉섭취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부족하고 고혈압 등 질환예방을 위한 나트륨 저감화 정책 확산 필요

- 미국, WHO에서는 나트륨 1일섭취량 기준을 하향 검토
- 나트륨 과잉섭취와 상관관계가 높은 고혈압 환자가 지속 증가
 - * 나트륨 섭취량 증가 → 혈압상승 → 뇌졸중 및 심혈관질환으로 사망률 증가
 - * 고혈압 환자 : '05년 400만명 → 09년 530만명(32% 증가)

2. 추진계획

□ 저나트륨 메뉴 개발 등 나트륨섭취 저감화 사업 확대

- 사회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국민적 인식 제고
 - * '나트륨 줄이기 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 개최('11.12)
- 나트륨 함량 줄이기를 위한 표시 확대 및 산업계 자율 참여모델 개발
 - * 감가네, 명인만두, 놀부 부대찌개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 외식분야 관리
- 나트륨 사용 저감화 시범사업 확대, 학교 및 가정의 메뉴관리
 - * 시범사업 : 3개 권역, 9개 시군구('11) → 7개 권역, 36개 시군구('14)

□ 나트륨 줄이기 행동양식 교육·홍보 강화 추진

- 소비자 및 조리자용 나트륨 저감화 실천강령 보급
- 대중매체를 통한 저나트륨 조리법 홍보 등

1. 배경 및 필요성

- 외식 증가·불규칙한 식습관 등에 따른 영양불균형·비만·당뇨병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
 - 미국은 적정 칼로리 섭취와 체중유지를 위한 식이정보 지침서 개발·보급, 일본은 식생활 안내서 제공
 - * 한국인 비만 사회경제적 비용 : 총 1조8,239억원(건강보험공단, '08)

2. 추진계획

-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중앙정부·지자체 식생활 교육 활성화 추진체계 강화
 -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확대
- 연령·대상별 교육 및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활성화
 - 주제·대상·시기별 맞춤형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 노인대상의 식품안전·영양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12년)
 - 전통 식생활 및 농어촌 체험 기회 확대
 - * 팜스쿨('14년 100개소), 농촌교육농장('15년 1,000개소) 목표
- 합리적인 식품선택을 위한 영양표시 확대 및 제도개선
 - 영양성분함량 DB 지속 구축 및 외식업체 자율 영양표시 확대
 -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12년 150개) 및 떡볶이 판매점 등에 자율표시 확대
 - 간장 등 식품 영양표시 의무화 추진 및 영양소 기준치 개정

1.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안전성·기능성을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강화
 - 건강기능식품 시장확대에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지원 필요
 - * 우리나라 기능성식품은 '08년 세계시장의 3.75%수준에 불과하나, '13년에는 세계시장의 7.2%를 차지 할 것으로 예측(Euromonitor, '08)

2. 추진계획

- 기능성이 확인되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제도개선 추진
 - 행정처분기준 현실화·세분화, 기능성 원료 신청자격 확대, 판매업 신고 완화 등 합리적 제도 개선
 - 안전하고 기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조·수입·유통 기반 마련 및 환경 개선
 - * GMP업체 확대, 부작용 신고처리시스템 개선, 컨설팅 업체 등록제 활성화 등
- 국민건강 증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정책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교육·홍보 차별화
 - 정보 접근성·활용성 제고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등 e-시스템 활성화
 - 시장현황 분석 등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실용정보 분석 제공 활성화
- 「기능성평가센터」 설립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 기능성평가 기업지원, 교육·컨설팅·정보제공, 기업공동 R&D 등 수행
 -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의 핵심 R&D센터로서 설립기본계획 기수립('11.10월)

4-2. 어린이 식생활 관리 개선

4-2-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 기반 강화 필요
 - 학교주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정착 유도
 -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 수준의 확인·평가·환류를 통한 지자체의 식생활 안전관리 기반 강화 요구

2. 추진계획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통·판매 실태 조사를 토대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판매업소 기획단속 실시 및 수거·검사 강화
-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
 -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으로 우수판매업소 지정범위 개선
 -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및 확대 추진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활성화
 - HACCP 지정업체에 현장심사 면제, 품질인증유효기간 삭제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품질인증제도 합리적 개선
-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공표
 - 식생활 안전 및 영양수준 조사·평가를 통한 식생활 안전환경 개선

4-2-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맞벌이 부부의 증가,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취학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확대 필요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의 안전·영양 관리 취약

* 영양사 고용의무 : 식품위생법 50명 이상, 영유아보육법 100명 이상

2. 추진계획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 연차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12년 20개소 → '14년 52개소)
-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및 업무지원을 위한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추진

< 연도별 추진계획 >

구분 \ 연도	계	'11	'12	'13	'14	'15
센터 설치수	70(개소)	10 (누계)	10 (20)	16 (36)	16 (52)	18 (70)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 수	7,464(개소)	900 (누계)	1,100 (2,000)	1,600 (3,600)	1,600 (5,200)	2,264 (7,464)
수혜대상 아동수	56만명(100명 미만 시설 아동수의 46%)	7만명	18만명	30만명	43만명	56만명

□ 급식관리 지원서비스를 빈곤아동 및 어르신까지 대상 확대

- 빈곤아동 및 어르신들의 식품섭취 패턴 조사를 통한 “식품안전·영양교실” 등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역아동센터의 빈곤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4-3.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4-3-1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1. 배경 및 필요성

□ 급식시설이 10년 이상 경과된 학교의 경우 시설 노후로 위생·안전사고 위험성 내재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기반 조성

* ('94) 특수학교 → ('97) 초교 → ('99) 고교 → ('02) 중학교 순으로 급식확대

2. 추진계획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 HACCP 원리를 적용하여 전처리실, 조리실 및 세척실 등 작업 공간 구분으로 교차오염 방지 등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노후 급식시설을 매년 700개교씩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현대화 사업 추진

* 급식시설 현대화율 : ('10) 42.8%(4,247교) → ('14) 64.0%(6,347교)

□ 위생적이며 쾌적한 식사환경 조성

- 초등학교 저학년 배식문제 해결을 위한 유희교실 활용 식당구성
- 교실배식 학교의 덤웨이터 설치 및 보온·보냉 배식대 확충 등
-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매년 9월)를 통해 개선방안 모색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 확인·지도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학교급식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급식대상이 많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문화의 특성,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점검 필요
 - * 학교급식 실시현황 : 전국 11,389개교에서 매일 718만명 급식

2. 추진계획

- 학교급식시설 위생·안전관리 실태 불시점검 강화
 - 학교내 급식시설에 대해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연2회 83개 항목 불시 전수점검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 → 5개 등급별로 D/B화 관리
 - 신학기 및 방학 후 개학전 등 취약시기에 식재료업체, 위탁급식업소 등에 대해 식약청 주관으로 교육청·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 교육지원청별로 학부모 및 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등으로 '학교급식 점검단'을 구성, 월 1회 이상 급식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 학교관계자의 비리사태 발생

-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을 통해 학교급식에 투명한 거래질서가 정착 되도록 지속적 행정지도 필요

* 인천·경남 등에서 식재료 납품관련 비리 적발('10년)

2. 추진계획

□ 비대면 전자계약 및 공동구매 확대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을 통한 전자계약 확대 → 계약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업무 경감

* 전자조달 비율 : ('10) 51.3%(4,689교) → ('14) 70.0%(7,900교)

- 읍·면단위 학교간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 유통비용 절감 및 구매 물량 규모화로 우수식재료 구매 가능

* 공동구매 비율 : ('10) 19.4%(1,776교) → ('14) 30.0%(4,300교)

□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및 생산자단체 직거래 등 확대

-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매 확대
-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 및 품목별 계약재배 활성화

1. 배경 및 필요성

- 패스트푸드 등 간편식의 범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가정의 식생활 기능이 약화되어 잘못된 식습관 형성 우려
 - 성장기 학생들에게 자기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필요
 - * 「학교급식법」(교과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복지부), 「식생활교육 지원법」(농식품부) 등에서 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에 관하여 규정

2. 추진계획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식생활 지도 강화
 - 실과 및 가정 등 관련교과 수업시간, 학교장 재량시간 및 특별 활동, 급식시간 등을 이용하여 체험중심 식생활 교육 실시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준수 및 식단 공개
 - 성별, 연령별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영양량과 식재료 원산지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는 홈페이지 공개 및 가정에 통보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
 - 학교급식 식단표에 콩·우유·계란 등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 제공
 - * NEIS 급식시스템 식단작성 프로그램에 알레르기 표시기능 신설(‘12.3)

V. 향후 추진계획

1. '12년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12년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12.2월말까지 마련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확정('12.3월)

*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시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출

2.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 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 필요시,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중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12년					'13년					'14년					'15년	
2월	3월	...	11월	12월	1월	2월	3월	...	11월	12월	1월	2월	3월	...	1월	2월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제출											
시행계획수립										추진실적 제출						
										시행계획수립					추진실적 제출	

1. 선제적 위해관리

세부과제	추진내용	추진부처
1-1. 안전한 식품 생산기반 확립		
1-1-1. 농축수산물 생산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환경 오염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기준 설정 ○ 노후화된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 생산해역 위생평가 및 지정해역 확대 	농식품부
1-1-2. 농약·동물용의약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불량농약에 대한 유통단속 및 교육강화 ○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농식품부
1-1-3. 사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MR 사료공장 HACCP 적용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시행 ○ TMR사료공장 HACCP 정기심사 실시 	농식품부
1-1-4. 축산물 도축·유통단계 위생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 도축세부검사기준 개선 및 검사능력 교육강화 	농식품부
1-1-5. 먹는 물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돗물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수질관리항목 확대설정 ○ 노로바이러스 감시시스템 구축 등 ○ 먹는 샘물 수량 및 수질변화 모니터링 강화 	환경부
1-1-6. 주류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주류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통한 위생강화 ○ 주류의 유해물질 저감화 추진 	식약청
1-1-7. 친환경 식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유기농전문단지 육성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투명성 제고 	농식품부
1-2. 사전 안전관리시스템 내실화		
1-2-1.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절차 간소화 및 위생수준 강화 제도개선 ○ 홍보 및 GAP농산물 공급 활성화 	농식품부
1-2-2.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HACCP) 적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적용 지속추진 및 자율적용 확대 ○ HACCP 평가 및 현장기술지도 확대 ○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1-2-3.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적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HP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 식품제조업체 GHP 적용 의무화 	식약청
1-3.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1-3-1.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확대 ○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법 개발 ○ 원산지 위반 단속 효율성 강화 	농식품부

1-3-2. 이력추적제 활성화 및 신속 회수 시스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이력추적제 활성화 및 기반 조성 ○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POS) 확대 ○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농식품부 식약청
1-3-3. 식품위해사범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공조 강화, 실시간 수사체제 확립 ○ 식품사범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 식품사범 수사역량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법무부
1-3-4. 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예방관리 ○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과학적·체계적 관리 ○ 식중독 예방·홍보 강화 	식약청
1-3-5.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이용 집단급식소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 지하수 사용 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 관리 제도 개선 	환경부 교과부 식약청
1-4. 수입식품 안전관리		
1-4-1. 생산지역·수출지역 안전성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효율적인 수출국 현지실사 ○ 수입식품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수입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국제 공조체계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1-4-2. 수입식품 통관단계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부적합 식품 수입차단 강화 	식약청 관세청
1-4-3. 유통 수입식품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유통안전성 실태 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 수입식품 유통경로 추적체계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1-5. 안전성 검사 수준 제고		
1-5-1. 식품위생검사기관 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수준의 검사 운영시스템 구축·운영 ○ 선진화된 검사능력평가 프로그램 구축·운영 ○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검사요원 교육 실시 	농식품부 식약청
1-5-2. 과학적 안전성 검사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 범위 확대 추진 ○ 선진국 수준의 잔류물질 검사대상 설정 및 검사계획 수립 	농식품부 식약청
1-6. 미래대비 선제적 대응		
1-6-1.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 예측 및 영향평가 ○ 위해인자 영향분석 및 관리 ○ 대국민 인식제고 및 관리체계 구축 	농식품부 식약청
1-6-2. 나노기술 응용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안전성 평가기술 선진화 기반 마련 ○ 정보교류 체계 구축 	식약청
1-6-3.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 국내산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평가 ○ 방사능 누출사고 위기관리 체계 구축 	농식품부 식약청
1-6-4.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제 및 관리방안 마련 ○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확보 강화 ○ 유전자재조합식품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2. 과학적 위해성평가

세부과제	추진내용	추진부처
2-1. 위해성평가 기능 강화		
2-1-1. 식품 위해성평가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평가 정보의 체계적 관리 ○ 과학적 위해성평가 기반 구축 ○ 위해요소별 특성규명 및 위해성평가 기술확보 	농식품부 식약청
2-1-2. 유해물질 재평가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5년주기 재평가 ○ 농약·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재평가 	농식품부 식약청
2-2. 식품 안전성 연구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2-2-1. 식품안전성 연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물질 잔류실태 파악 및 시험법 개선 ○ 유해물질 안전성 연구확대 및 취약분야 관리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2-2-2. 연구인력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인력의 교육·훈련 강화 ○ 위생관리·정밀검사 교육 강화 	농식품부
2-3. 위해정보 수집·분석·평가 기능 강화		
2-3-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국가간 네트워크 강화 ○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2-3-2. 위해정보 심층분석 및 평가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심층적 위해정보 분석·평가 시스템 강화 ○ 위해정보평가 모니터단 구성·운영 	농식품부 식약청

3. 적극적 참여와 소통

세부과제	추진내용	추진부처
3-1. 소비자와의 소통채널 확대		
3-1-1.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참여 식품안전프로그램 확대 ○ 이해관계자 식품안전정보 교류 활성화 ○ 식품안전 정책 심의과정에 위원 참여 확대 	농식품부 식약청
3-1-2. 소비자 식품안전 정보 공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정보 공개 확대 ○ 식품안전정보서비스 기능 개선 및 최적화 	농식품부 식약청
3-1-3. 소비자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인증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통폐합 하고, 공통표지(Logo) 도입 ○ 인증기관 지정·관리기준 국제화 및 인증기관 사후관리 강화 	농식품부
3-1-4.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표시 기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표시분과 대응('12~'14년) ○ 식품 표시기준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농식품부 식약청
3-2. 중앙부처간 소통 강화		
3-2-1. 식품안전 규정관리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 법령 운영에 대한 관계부처 협력 강화 ○ 규정 제·개정등 시 사전협의 강화 	관계부처
3-2-2. 식품안전정보 공유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관계부처 공유강화 ○ 식품안전정보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3-3. 중앙-지자체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		
3-3-1. 식품관련 업체 등 위생관리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관련 업체 위생 지도·점검 등 위생 관리 협력체계 강화 ○ 식품안전정보 실시간 공유체제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3-3-2. 식품안전성 검사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동시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 검사기관 간 지식·정보 공유체계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3-4. 국제공조 강화		
3-4-1. 코덱스 등 국제공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덱스 등 국제 규격화 활동 확대 ○ 코덱스 규격 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활동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3-4-2. 국가간 식품안전 MOU 등 협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 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 수출국 소재 식품위생검사기관과의 협력 확대 	농식품부 식약청

4. 건강한 식품문화 조성

세부과제	추진내용	추진부처
4-1. 나트륨 섭취 저감화 등 영양관리 개선		
4-1-1. 국민의 나트륨 섭취 저감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나트륨 메뉴 개발 등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확대 ○ 조사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 	식약청
4-1-2.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 ○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및 대상별 교육 활성화 ○ 합리적 식품선택을 위한 영양표시 확산 	농식품부 식약청
4-1-3. 건강기능식품 제도 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능식품 제도 선진화 ○ 건강기능식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지원 강화 	농식품부 식약청
4-2. 어린이 식생활 관리 개선		
4-2-1.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 	식약청
4-2-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 ○ 급식관리 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식약청
4-3.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4-3-1.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 매년 700개교씩 현대화(지방교육재정) 	교과부
4-3-2.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불시점검 실시 ○ 교육청별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교과부
4-3-3.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구매 비대면 전자계약 확대 ○ 인근 학교간 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교과부
4-3-4. 학교 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식생활 지도 강화 ○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도입('12) 	교과부